



##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

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·세출 예산서

부 천 시



# 목 차

1. 예산총칙	3
2. 사업예산	15
○ 사업예산총괄	17
○ 수익적수입	21
○ 수익적지출	25
- 본 청(하수과)	27
- 원미구(건설과)	31
- 소사구(건설과)	35
3. 자본예산	41
○ 자본예산총괄	43
○ 자본적수입	47
○ 자본적지출	51
- 본 청(하수과)	53
- 소사구(건설과)	59
4. 자금운영계획	63
※ 별첨	69



# 1. 예산총칙



## 1. 예산총칙

제1조(총칙) 2015년 부천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제2조(업무의 예정량)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.

(하수도사업)

가) 하수 전수	(상수도 : 97,751 지하수 : 1,024 ) 98,775전
나) 연간 하수처리량	297,110천 m <sup>3</sup>
다) 1일평균 하수처리량	814천 m <sup>3</sup>
라) 주요건설개량사업	
○ 역곡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.....	26,153,000천 원
○ 여월지구 하수도정비 시범사업 .....	10,848,600천 원
○ 굴포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.....	2,651,564천 원
○ 하수 및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.....	21,672,000천 원
○ 굴포(역곡)하수처리장 대수선 .....	9,422,227천 원
○ 원미구 하수관·암거 및 맨홀 등 보수 정비공사 .....	1,712,240천 원
○ 소사구 하수관·암거 및 맨홀 등 보수 정비공사 .....	2,415,660천 원
○ 오정구 하수관·암거 및 맨홀 등 보수 정비공사 .....	1,913,680천 원

제3조(수익적 수입 및 지출)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수

입

제 1 관 하수도사업수익 48,145,412천 원

제 1 항 영업수익	46,201,262천 원
제 2 항 영업외 수익	1,944,150천 원
제 3 항 특별이익	0천 원

지

출

제 1 관 하수도사업비용 29,798,112천 원

제 1 항 영업비용	26,520,047천 원
제 2 항 영업외비용	49,000천 원
제 3 항 특별손실	29,065천 원
제 4 항 예비비	3,200,000천 원

제4조(자본적 수입 및 지출)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 대비 부족 금액 70,871,506천원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 18,347,300천원 및 이월 이익잉여금 및 당년도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액 52,524,206천원으로 보전한다.

## 수

## 입

제 1 관	자본적 수입	27,456,100천 원
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

제 1 항	투자자산	0천 원
제 2 항	고정자산매각수입	0천 원
제 3 항	고정부채수입	0천 원
제 4 항	자 본 금	0천 원
제 5 항	자본잉여금수입	27,456,100천 원
제 6 항	기타자본잉여금수입	0천 원

## 지

## 출

제 1 관	자본적지출	98,327,606천 원
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

제 1 항	투자자산	0천 원
제 2 항	유형자산	27,206,952천 원
제 3 항	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	4,950천 원
제 4 항	비가동설비자산취득	16,145,664천 원
제 5 항	유동부채상환	0천 원
제 6 항	비유동부채상환	342,000천 원
제 7 항	예 비 비	54,628,040천 원

제5조(계속비)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(그 세부내역은 별첨 “계속비조서”와 같다)

관	항	사업명	총액	년도	연 할액
자본적지출	가동설비자산	심곡춘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	21,850,000천원	2013년도 이전 2014년도 2015년도 이후	- - 21,850,000천원
자본적지출	유형자산취득	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 관로 정밀조사용역	4,377,000천원	2013년도 이전 2014년도 2015년도 이후	- - 4,377,000천원
자본적지출	비가동설비자산	역곡하수처리장증설공사	46,525,736천원	2013년도 이전 2014년도 2015년도 이후	- 14,510,000천원 32,015,736천원
자본적지출	비가동설비자산	굴포천 통합집중형 하수관로 정비사업	6,242,289천원	2013년도 이전 2014년도 2015년도 이후	- 429,000천원 5,813,289천원

제6조(건설·개량비 및 사고이월) 건설·개량비 및 사고이월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(그 세부내역은 별첨 “건설·개량비 및 사고이월조서”와 같다)

○ 건설개량비

(단위 : 천원)

관	항	사업명	총액	년도	연 할액
자본적지출	비가동설비자산취득	삼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	49,500	2014년도	49,500

○ 사고이월

(단위 : 천원)

관	항	사 업 명	총 액	년 도	연 할 액
		해 당 없 음			

제7조(채무부담행위)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사 항	기 간	한 도 액
해 당 없		음

제8조(지방채) 공기업채 발행을 위한 기채의 목적, 한도액, 기채의 방법,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기 채 목 적	한 도 액	기채방법	이자율	상 환 방 법
사업명 :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차입선 : 환경부(환경개선특별회계) 상환재원 : 국비	3,420백만원	융자금원리금 상환보전	3.08%	5년거치 10년균분상환

※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한 발행총액 기채

제9조(일시차입금)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0 천원으로 정한다.

제10조(예산전용금지과목) 다음에 게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.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(1) 인 건 비                 | 2,456,031천 원 |
| (2) 업무추진비(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) | 18,080천 원    |

제11조(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) 하수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·국·도 회계로부터 하수공기업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13,212,000천 원이다.

제12조(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) 이월이익잉여금 -천 원과 당년도 예정이익잉여금 -천 원 총 - 천 원 중 - 원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

- |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
| (1) 이월결손보조금 | 0 천 원 |
| (2) 이익적립금   | 0 천 원 |
| (3) 감채적립금   | 0 천 원 |
| (4) 건설개량적립금 | 0 천 원 |
| (5) 납 부 금   | 0 천 원 |

제13조(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)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(그 세부내역은 별첨 “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”와 같다)

구 분	종 류	명 칭	수 량(식)	금 액(천 원)
		해 당 없 음		

제14조(회전기금) 회전기금의 한도액은 0 천 원으로 정한다.